

의안번호	제 566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354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한범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2월 13일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한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6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2월 13일

발 의 자 : 박한범, 김학철, 연철흠,  
박봉순, 이연구, 최병윤,  
엄재창

## 1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·장려하고,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자 직무발명의 보호·장려를 위한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(특허청)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관계없음.
- 라. 입법예고 : 2017. 2. 1 ~ 2. 11(10일간)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과 제2항 중 “100분의 30” 을 각각 “100분의 50” 으로 한다.

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처분보상금)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<u>100분의 30</u>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<u>100분의 30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처분보상금)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<u>100분의 50</u>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<u>100분의 50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(특허청)

제16조(등록보상금)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  
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  
하여야 한다.

제17조(처분보상금)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  
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 
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  
급하여야 한다.

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 
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  
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 
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

##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가. 명 칭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

나. 주요사업 :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

다. 추진근거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

### 3. 관련조문

○ 안 제8조(처분보상금)

-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

○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금(처분보상금)을 상향지원

나. 추계의 전제

○ 2016년까지의 지원 현황을 감안하여 비용추계

다. 추 계 결 과 : '17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천만원 정도 소요
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'17년)	2차년도 ('18년)	3차년도 ('19년)	4차년도 ('20년)	5차년도 ('21년)	계
세 입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
국 비 도 비 기타(사업수입)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세 출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사 업 비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재원 조달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지방세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

※ 처분보상금 : '11년도 4건 12,901천원, ' 12년도 17건 11,718천원, '13년도 1건 900천원, '14년도 1건 463천원, '16년도 26건 14,839원

**5. 작성자 :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문석구**